

화재·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

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

1 지원대상

근로자를 고용한 **50인 미만 사업장 전업종**

▶ **건설업 본사(건설현장) +**

제조·서비스업 화재폭발 고위험현장 등 지원

※ 제외대상 :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위 이내 토목·건축·종합업체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공공단체, 산재보험 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

2 지원금액 및 조건

지원금액

동일사업주(법인)당 **최대 2,000만원** 까지
(부가세는 사업주 부담)

※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보조한도액 (2,000만원)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

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**70%**



3 지원절차



- ① 온라인 신청(clean.kosha.or.kr),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 접수
 » 제출서류 및 서식: 클린사업 홈페이지(알림마당 → 서식모음 및 자료실 8번) 참고
 » 신청매뉴얼: 클린사업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
- ②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
 » [**건설업 본사**] 도급계약서 사본, [**제조업 등**] 작업장 내 설치위치 사진 등(필요 시 현장방문)
- ③ 이행보증보험 가입·제출



4 지원품목 및 기준

지원대상	지원품목	지원기준
건설업 본사	유증기 급배기 환기팬(방폭형) 및 후렉시블 덕트	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 품목당 최대지원한도 1,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
	비상대피유도선(등)_임시소방시설	
	용접작업 불연포	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% 이내 지원 ※ 공사현장 수 '19년 3개소, '20년 1개소인 경우 ☞ 최대 6개 지원가능(3개소 x 2배)
	복합(산소 포함)가스농도측정기	
	가스검지 및 경보장치(감시시스템)	
제조업 등	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	• 인화성물질 제조·사용작업 중 가스·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 시공 지원 •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
	방폭전기기계기구	
	건축물 내화구조(내화도장공사 등)	• 인화성물질 제조·사용·취급 작업장소에 필요수량 지원 • 밀폐공간 화재·폭발위험시 사업장당 3개 이내 지원
	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·제진장치	
	가스검지 및 경보장치	
	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	
	복합(산소 포함)가스농도측정기	

※ 임의처분, 손망실 시 보조금 환수, 건설업은 “현장 반출입 대장” 작성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화재·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

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

5 주요 지원품목



1

▶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(방폭형 가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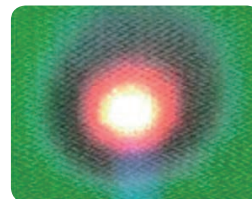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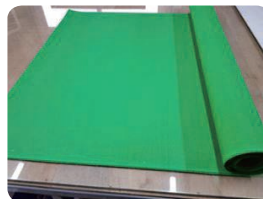
2

▶ 후렉시블 덕트



3

▶ 비상대피 유도선(등): 건설업만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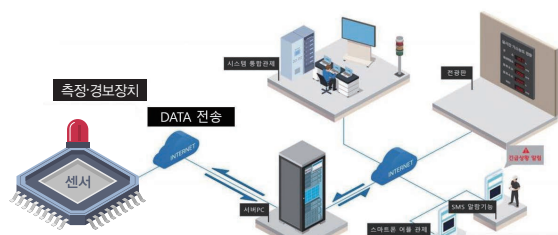
4

▶ 용접작업 불연포



5

▶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



6

▶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



7

▶ 복합 가스농도 측정기(산소 포함)



8

▶ 방폭전기기계·기구



9

▶ 건축물 내화구조(내화도장공사 등)



10

▶ 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·제진장치

6 문의처

- ▶ 지역별 일선기관: ☎ 1544-3088(대표번호)
- ▶ 클린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지역별 문의처 참조